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713 판결 [주식명의개서등]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24다213713 주식명의개서 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75668 판결
판결선고	2024.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이므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하고, 주식양도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약정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식양도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하고, 주식양도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권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약(주심) 김선수 오경미